제159회 국회에서 성립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6월 2 일 법률 제73호)」에 대하여

1 입법의 배경

근년, 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의 하나로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가 지적 되어 그 대책이 각방면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만명으로 추계되는 불법 체류자등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실시해, 불법 체류자 적발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 외에 불법 체류자 스스로가 일본에서의 불법 체류 상태를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것을 재촉하는 시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륙허가등을 받아 합법 체류를 가장하는 실질적인 불법 체류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1981년에 난민 인정 제도를 창설한지 20여년이 경과해, 최근의 국제 정세의 변화등에 따라,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것을 감안하여, 보다 공정한 수속에 의해 난민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비호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막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과 관련되는 결격 조항의 재검토를 하기로 한 1999년 8월의 「장애인 시책 추진 본부 결정」을 근거로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사물의 이치를 판단 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상륙 거부의 범위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요청을 근거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2 개정의 포인트

(1) 불법 체류자 대책 *(2004년 12월 2일 시행)*

벌금의 인상

불법 입국죄등에 관한 벌금액의 상한이 인상됩니다.

○불법 입국의 죄등 벌금 30만엔→３００만엔

·위조?변조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밀입국 한 경우

·재류 기간을 경과해 불법 잔류(오버스테이)한 경우

·유학생이 오로지 풍속 영업점등에서 호스테스로서 일을 한 경우 등

○ 불법 취업 조장의 죄 벌금 200만엔→３００만엔

?불법 체류자 혹은 취업 할수없는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불법취업 활동을 시키거나 다른 회사등에 알선 한 경우 등

○ 무허가 자격외 활동의 죄 벌금 20만엔→２００만엔

·취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용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등

상륙 거부 기간의 재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 금지되는 기간(상륙 거부 기간)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과거에 강제 퇴거경력등이 있는 자 １０년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자 １년

○당국의 적발등에 의해 강제 퇴거당한 자(과거에 강제 퇴거경력등이 없는자) ５년

출국 명령 제도의 신설

불법 잔류(오버스테이) 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입국 관리 관청에 출두할 경우
○불법 잔류 이외의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국 후에 절도죄등의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형등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경우
○과거에 강제 퇴거경력등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나 귀국 여비를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의 상륙 거부 기간은 1년이 됩니다.

수속의 흐름

출 두
↓
위반 조사
(수용 없음)
↓
심 사
↓
출국 명령
↓
임의 출국

재류 자격 취소 제도의 신설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다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재류 자격의 취소 대상이 됩니다.

①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속인 경우

예 : 일본으로부터 강제 퇴거당하고 상륙 거부 기간중에 있는 자가, 그 사실을 감춰, 이름을 변경해 상륙허가등을 받은 경우

② 활동 내용을 속인 경우

예 : 일본에서 오로지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학업을 한다고 속여 「유학」의 재류자격등을 취득한 경우

③ ① , ②이외의 내용을 속인 경우

예 : 신청인이 자신의 학력이나 조리사등의 경력등을 속여 상륙허가등을 받은 경우

④ 신청인 이외의 자가 사실과 다른 문서등을 제출한 경우

예 : 외국인 연수생의 수용 기관이 허위의 연수 계획서등을 제출해 해당 연수생이 상륙허가등을 받은 경우

⑤ 소정의 재류 자격※1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가, 그 재류 자격과 관련되는 활동을 정당한 이유※2 없이, 3개월이상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 : 등교를 하지 않아 학교로부터 제적된 유학생이, 그 후에도 다른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유학생으로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주) ③ ~ ⑤에 해당되어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국 유예 기간이 지정되어 그 기간중이면 임의 출국 할 수 있습니다만, ① 및 ② 에 해당되어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가 됩니다.

※1 소정의 재류 자격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 「기업내 전근」, 「흥행」, 「기능」, 「문화 활동」, 「단기 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 체재」, 「특정 활동」

※2 정당한 이유
·유학생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휴학중에 상당 기간 요양이 필요하게 된후 장래적으로는 학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무처의 회사가 도산해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후, 재취직을 위해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수속의 흐름

취소 사실
의 판명
↓
의견의 청취
↓
재류 자격 취소
(출국 유예 기간의
지정)
↓
임의 출국
또는
퇴거 강제

(2) 난민 인정 제도의 재검토(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

임시체류 허가 제도의 창설

불법 체류자인 난민 인정 신청중인 자에 대한 법적 지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를 창설하기로 하고,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 수속을 정지해, 난민 인정 수속을 선행합니다.

다만, 일정한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 난민 인정 신청을한 자※1, 박해의 우려가 있던 영역으로부터 직접 일본에 들어오지 않은 자※2및 일본에 들어온 후 형법등이 정하는 일정한 죄를 범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자는 임시체류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6개월을 경과한 이유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체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제3국을 통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나,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매우 짧고 그 나라에서는 비호를 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임시체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등의 법적 지위의 안정화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재류를 인정하여, 법적 지위의 안정화를 조기에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복 신청 제도의 재검토

난민 인정 수속의 공정성·중립성을 보다 높이는 관점에서, 제3자를 불복 신청 심사 수속에 관여 시키는 난민 심사 참여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난민 심사 참여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가 해외에 있어 수집이 어렵고, 한정된 증거를 적확하게 평가해 적정한 사실 인정을 실현하는 것, 해외 정세를 심사·판단에 정확하게 반영 시키는 것, 조약등을 적절히 해석하는 것 등이 필요함으로, ①사실 인정의 경험이 풍부한 법조 실무가, ②지역 정세나 국제 문제에 능통한 전직 외교관 상사등 해외 근무 경험자·해외 특파원 경험자·국제 정치학자·유엔 관계 기관 근무 경험자, ③국제법·외국법·행정법등의 법률 전문가등에서 선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근거하는 불법 체류자등과 관련되는 난민 인정 수속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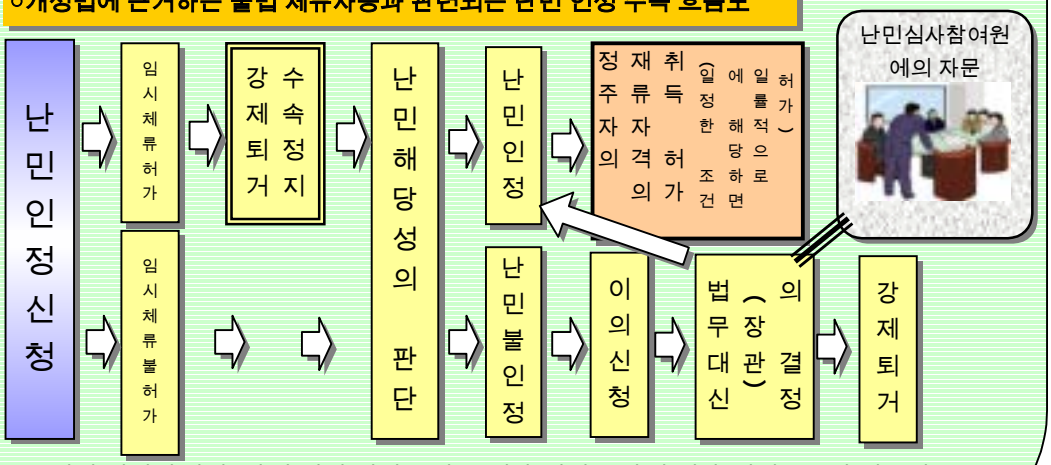

※이번 개정에 따라, 난민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 기간의 제한(원칙으로서 일본에 상륙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는 철폐되었습니다.

(3) 정신 장해인에 관한 상륙 거부 사유의 재검토

(2004년 8월 2일 시행)

정신 장해인인 이유 만으로서 일률적으로 상륙 거부 사유로 하는 것을 개정하고 거부 대상자를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사물의 이치를 판단 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 있는 자등이 소정의 보조자를 수반 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